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증과세율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1771
----------	------

제출연월일: 2021. 6. 8.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안이유

코로나19 장기화로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 제한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대상) 재산세 과세기준일(21. 6. 1.) 현재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

※ 건축물의 일부만 고급오락장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증과된 부분에 한해 감면 적용

나. (감면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해 영업을 금지된 사업장 중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1항제1호다목2)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되는 세액 중, 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111조제1항제2호다목의 일반 건축물의 세율을 적용하여 초과되는 세액을, 토지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111조제1항제1호나목의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초과되는 세액을 각각 감경한다.

다. (적용) 2021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 라. (중복감면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3. 근거법규

-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지방의회 의결 감면)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2항제4호(조례에 따른 지방세감면)
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중복감면 배제)
마. 「지방세법」 제111조(재산세 세율)
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고급오락장 범위와 적용기준)

근거법규

가. 지방의회 의결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나. 감면 제외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 15.>

-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 감면제외 예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2항제4호 신설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신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라. 중복감면 배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마. 재산세 증과세율: 지방세법 제111조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바. 고급오락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 (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